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사 보 고

제 90 회 사 천 시 의 회 임 시 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2004. 10. 22)

1. 심사 경과

- 가. 2004. 10. 4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4. 10.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49호)
- 다. 2004. 10. 22 :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가. 제안 이유

주민등록법 개정(2004. 3. 22)으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조례명 개정

-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

2) 보험 가입대상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추가

3)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정의 규정

다. 관계 법령

-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시행령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2004. 3. 22 개정 된 바
- 보험 가입대상을 당초 인감업무담당공무원만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등

- 록담당공무원을 추가로 지정 하므로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 이와 관련하여 조례규정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을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으로 하며
 - 조례내용을 함축한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 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원안 가결 의견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 음